

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영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1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0.

발 의 자 : 김영환 · 한민수 · 박홍배
최민희 · 진성준 · 권향엽
허 영 · 박지혜 · 박해철
김 윤 · 정진욱 · 이기현
김성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도록 하면서,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되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와 같은 현행법에 대하여는, 그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이 적발되더라도 이자 약정 부분만이 무효화 되는 것이어서 채권자로서는 ‘미적발되면 폭리를 취할 수 있고 적발되더라도 최소한 원금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’는 심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불법적인 고금리의 근절이라는 입법 취지가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뿐만 아니라 금

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, 해당 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를 처벌하도록 하여, 불법적·음성적 고리대금 시장을 근절하고 공정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2조, 제3조, 제5조 및 제8조).

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“이자로서”를 “이자율이”로, “부분은”을 “경우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,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채권자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제3조 중 “선이자률”을 “선이자로”로, “경우에는 그 공제액이”를 “공제액이”로, “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”를 “경우에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복리약정은”을 “복리약정에 따른 이자율이”로, “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”를 “경우에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2조제1항에서”를 “계약상의 이자율이 제2조제1항에서”로, “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”을 “초과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(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도록 이자율을 변경하여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채권자는

3년”으로, “1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.

제8조(별칙)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(생략)

---복리약정에 따른 이자율이-----

경우에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.

제8조(별칙) ① 계약상의 이자율이 제2조제1항에서-----
-----초과하는
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 (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도록 이자율을 변경하여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한 채권자는 3년-----
-----3천만원-----

② (현행과 같음)